**ESC 회칙** 2018. 9. 6. 개정

제 1조 설립목적

① ESC는 환경 문제를 통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회 성격의 학회로 창설되어 환경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통계적 능력을 배양하는 학회이다.

② ESC는 환경 통계 인식의 저변확대는 물론이고, 환경 정책 및 통계 방법론까지 생산함으로써

그 의의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.

③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 인력에 대한 인재상을 선도하고 양성하는 것 또한 주된 목적이다.

④ 통계학을 이용하여 데이터 사이언스에 접근하고 논증을 추구하여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.

제 2조 의결권

① ESC의 모든 권력은 기본적으로 전체 학회 구성원 회의에 있으며, 회장단이 이를 대행한다.

② 참정권(임명권/투표권/피선거권) 대상자는 1학기 이상 활동에 활동 점수가 1000점 이상인 자로 제한

한다.

③ 학회 운영진 회의는 전반적인 학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, 각 부 부장이 불참 시에는

해당 부서 구성원이 대리 참석한다. 해당 학기 각 부 부서활동에 대한 결정권한은 운영진 회의에 있다.

④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안건은 전체 구성원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다.

1) 전체 구성원 회의는 개강 총회, 종강 총회(정기총회)로 연 4번 개최한다.

2) 정기 총회 외 임시 총회는 학회 구성원의 제안을 받아 회장이 개최하며 최소 1주일 전에

사전 공지해야 한다.

⑤ 학회 회칙의 개정은 구성원의 제청 하에 전체 구성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표결에 의한다.

표결 기준은 전체 대상인원 3 분의 2의 참석과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대상 인원은 표결

당시의 참정권 보유자 수로 규정한다. [이하 전체 인원에 대한 정의는 동일하다.

제 3조 조직

① ESC는 회장단, 기획부, 편집부, 학술부로 구성된다. 구성원들은 회장단을 제외한 구성원들은

3개의 부서 중 하나에 반드시 소속되어 활동해야 한다.

1) 기획부

- 학회 내의 여가활동 및 각종 행사(예. 소풍 MT 세미나 뒤풀이 등)를 기획, 진행한다.

2) 편집부

- 홍보관련 일을 전담하며, 한 학기 활동을 정리하여 게시한다.

- 회장단의 동의 하에 학회 구성원 전부를 일부 활동에 동원할 수 있다.

3) 학술부

- 다음 학기 세미나 주제를 선정하며, 학기 중 세미나 진행을 보조한다.

- 대학원생들은 학술부 명예회원으로 활동하며, 세미나 진행 중 이론적인 부분을 보조하는

역할을 한다.

각 부서 최소 인원은 4명으로 하되 편집부의 인원이 기획부, 학술부의 인원보다 많도록 한다.

② 학회 운영진은 회장, 부회장(학부 대표), 간사(대학원 대표), 총무, 편집부장, 학술부장으로 이루어진다. 이 중 회장, 부회장, 간사(대학원 대표)를 회장단이라 칭한다. 총무는 소속 부서 없이 회장단과 함께 독립적으로 활동한다.

③ 학회 회장 및 부회장(학부 대표)은 매 학기 종강 총회에서 선출한다. 간사(대학원 대표)의 경우에는 간선으로 선출한다. 부득이하게 공석인 경우, 대학원 대표 선출시까지 회장이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는다.

④ 회장, 부회장, 간사(대학원 대표)를 제외한 학회 차기 운영진은 신임 회장단의 협의 하에 선임한다.

⑤ 회장단의 연임은 금지한다. 하지만, 부회장의 다음학기 회장 선출은 가능하다. 간사(대학원 대표)는 연임이 가능하며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 4조 책임 및 권한.

① 회장은 학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하여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.

② 부회장은 학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하여 회장 다음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.

③ 총무는 학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회계 처리를 관리한다. 종강 총회에 총무는 해당 학기에 대한 회계

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인터넷 상에 공지해야 한다.

④ 편집부장은 편집부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.

⑤ 부회장은 기획부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.   
⑥ 학술부장은 학술부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.

⑧ 간사(대학원 대표)는 대학원생의 학술부 활동에 대한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.

⑨ 총무는 세미나 일지 작성 및 학회 구성원의 세미나 활동 점수를 관리하며, 종강 총회에 해당 학기에 대한 세미나 일지 및 활동점수를 보고하며 이를 인터넷 상에 공지해야 한다.

제 5조 구성원 활동규정.

① 학회 구성원은 매 학기 초에 선출하고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장에 속한다.

② 활동 점수는 기본 1000점에서 시작하며 감점과 가점의 기본은 다음과 같다.

1) 무단 결석은 -300점이며 이유 결석은 -100점으로 한다.

2) 정기 총회 무단 결석은 -500점 이유 결석은 -200점으로 한다.

3) 이유 결석은 활동 최소 하루 전에 통보해야 한다. 기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당일 통보도 가능하다. [부득이한 경우: 학교 규정+이성과의 이별]

4) 학기 중 정기 세미나는 참석 점수가 +50이며 지각의 경우(세미나 시작 후 5분까지 : 출석 / 세미나 시작 후 6분 ~ 20분까지 : 지각)는 +20점을 부여한다. 세미나 시작 후 20분이 지나면 결석으로 처리한다.

5) 분과 모임의 결석은 감점이 없되, 분과장은 심각하게 그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과의 협의 하에 해당 구성원을 분과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6) 세미나 자발적발표자의 경우 +500점, 비자발적 발표자 +300점, 조장의 경우 +300의 가점을 한다.

7) 기타 활동 점수는 회장의 권한으로 결정하며, 권한 행사 전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.

8) 활동 점수는 매 학기 초에 갱신된다.

9) 활동 점수 최고점을 기록한 학회원 3명에게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부상으로 전공서적을 수여한다. 전공서적의 금액은 6만원 이하로제한하되 갯수는 제한하지 않는다.

③ 가입 첫 학기, 총 세미나 횟수의 1/4 이상 결석 시 영구제명한다. 첫 학기가 아닐 경우 회장단

면담을 통해 해당 회원에 대한 처우를 결정한다.

④ 학회 운영과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 구성원에 대하여 운영진 회의에서 임의로 구성원 퇴출을 결정할 수 있으며, 그 대상자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전체 구성원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. 전체 구성원 3 분의 2 이상의 참석과 학회 잔류에 대한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퇴출결정을 면할 수 없다.

제 6조 세미나 규정.

 ① 회장은 학기 내 최소 6번의 전체 세미나를 열어야 하며, 구성원에 필요에 따라 1개 이상의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. 6번의 세미나 중에서는 team-project가 최소 1번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회장은 방학마다 최소 1번의 세미나를 열어야 하며 그 형식에 대한 제한은 없다.

③ 회장은 세미나 내용 구성을 위하여 학회 운영진 및 구성원과 함께 LT(Leadership Training)를

열어야 한다. 단, 기본 형식은 학술부에서 논의한 틀에서 시작한다. 학술부 결정사항을 번복하기

위해서는 학술부 구성원 전원과 학회 운영진 2/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.

④ 모든 세미나 일정(정기 세미나 2번/ 방학 세미나 2번)은 최소 한 달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.

⑤ 세미나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임시 전체 구성원 회의를 열어 표결에 의하여 학회 해산을 결정한다. 해산 기준은 대상 인원 3 분의 2 참석과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